



산업폐기물 관리체계의 개편방향

1. 서 언

산업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및 이러한 유해폐기물에서 유출되는 폐수로 인한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더우기 오염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나 인간에게 만성 또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을 환경보전법의 한계의 장만으로 관리하여오다 1986.12.31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종래의 관리체계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해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포함하여 폐기물전반의 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금년 9월이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

2.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89년말 현재 총 9,822개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량은 1일 평균 57,645톤이며 그중 약 96%가 일반산업폐기물이고 약 4%가 특정산업폐기물이다. 1989년도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1984년도 보다 1.8배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는 약 13%이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은 배출업소에서 자가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생이용자에게 위탁처리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약 45%가 자가처리되고 약 55%가 위탁처리된다. 유해성이 큰 산업폐기물은 다른 산업폐기물보다 위탁처리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추이는 <표 1>과 같으며 발생 및 처리실적은 <표 2>와 같다.

3. 산업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점

산업폐기물은 본래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

〈표 1〉

산업폐기물발생량 증가추이

(단위 : 톤/ 일)

구 분	'84	'85	'86	'87	'88	'89	증가율(%)	
계	31,354 (100)	33,349 (106)	37,065 (118)	40,307 (129)	40,307 (129)	57,645 (184)	13.0	
특 정	소 계	909	1,020	1,558	1,505	2,310	2,310	20.5
	특 정 유 해	50	67	87	104	162	162	26.5
	폐 유	220	228	290	321	434	434	14.6
	폐 합 성 수 지	239	189	306	372	546	682	23.3
일 반	폐 산 · 폐 알 카 리	400	536	875	708	906	1,032	20.9
	소 계	30,445	32,329	35,507	38,802	49,217	55,335	12.7
	유 기 물 류	6,136	6,140	6,365	7,797	15,170	15,335	21.1
	무 기 물 류	24,309	26,189	29,142	31,005	34,047	39,382	10.1
업 소 수	5,756	10,272	11,633	6,675	8,015	9,822		

〈표 2〉

산업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89)

(단위 : 톤/ 일)

구 분	발 생 량	처 리 형 태		위 탁 처리율(%)	비 고	
		자가처리	위탁처리			
계	57,645	26,007	31,638	54.9	총배출업소수 : 9,822개소	
특 정	소 계	2,310	488	1,822		78.9
	특 정 유 해	162	6	156		96.3
	폐 유	434	76	358		82.5
	폐 합 성 수 지	682	218	464		68.0
	폐 산 · 폐 알 카 리	1,032	188	844	81.8	
일 반	소 계	55,333	25,519	29,816	53.9	
	유 기 물 류	15,953	6,017	9,936	62.3	
	무 기 물 류	39,382	19,502	19,880	50.5	

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소나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출업소가 자가처리를 기피하여 처리업소에 위

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업종에 해당되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그 발생원의 종류, 사용되는 원

료 및 부원료의 종류등에 따라 다양각색이어서 이러한 산업폐기물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처리업소의 영세성도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 42개 처리업소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보면 평균 14억원정도이며, 종업원수도 평균 46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자본금 규모에 있어서도 5억만미만의 업체가 88%를 점유하고 있는등 매우 영세하다. 이와 같이 처리업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게 되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과당경쟁을 하게되며, 처리시설을 보수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시설을 항상 정상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생매립지의 확보가 필연적임에도 매립지의 확보는 인근주민의 반발과 매립지 입지관계법령에 의한 입지제약등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미 설치·운영중에 있는 매립지도 주민반발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같이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있어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매립지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지가하락, 생활환경의 저해등의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또 매립지의 입지가 용이하기 위하여는 매립지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이 많아야 하나 현재 매립지의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4. 산업폐기물 관리체계의 개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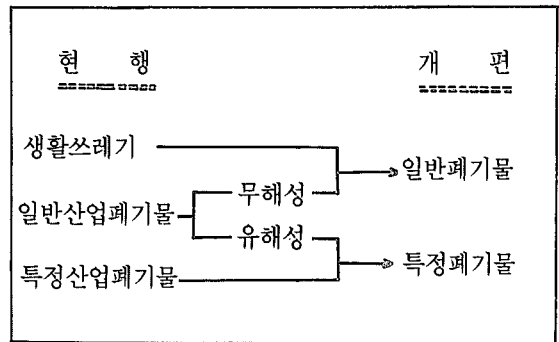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관리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적정한 산업폐기물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게 되며 주요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폐기물 분류체계의 개편

현재 폐기물은 가정·상가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로 구분되며 법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한 후 그

이외것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산업폐기물은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산업폐기물은 다시 특정유해산업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폐알카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일반산업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그 성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유사하여 혼합처리가 가능함에도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어 매립지 확보등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쓰레기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매립지에 처리토록 하고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특정유해산업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 폐산·폐알카리등의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중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만을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그림1 참고>



<그림 1> <폐기물분류체계 개편의 개요>

(2)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강화

현행법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무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지도록 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무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도록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지원과 시·도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고, 특정폐기물에 대한 책무는 국가가 지도록하여 유해성이 있는 특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추

진하게 된다.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수용 또는 사용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을 수용 또는 사용토록 추진하게 된다.

(4) 처리업의 전문화 유도 및 특정폐기물 공공처리 확대

현행법 아래서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경우 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여 처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처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국가가 특정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처리업소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특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처리를 확대하게 된다.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산업발전과 공업수준의 향상에 따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 또는 자원화를 촉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처리비의 예치제를 시행하게 된다.

(6)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강화

환경처장관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후 관리처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사전에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은 매립시설 설치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토지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최 문 영/ 환경처 산업폐기물과 토목기과